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안전사용과 취급관리 교육 강화 협조 요청

1.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귀 협회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마약류관리자(약사)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불가피하게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종업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종업원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하므로 종업원에게 마약류 취급에 관한 지도·관리·감독, 교육 등 수시로 실시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3. 우리 처(마약관리과)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 병·의원 등에서 마약류취급자를 위해 취급업무를 하는 종업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마약류의 안전 사용, 취급관리 주의사항, 최신 정보를 365일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는 상시 교육과 일정기간 수강할 수 있는 집중교육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참여방법 등은 붙임 자료 참고
4. 우리 처(마약관리과)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취급자와 종업원이 규정을 잘 숙지하여 준수하고, 취급자는 종업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난·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니 회원 및 비회원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온라인 교육센터 관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
사단법인 한국동물병원협회, (사)한국병원약사회

주무관

남혜연

약무사무관

김지선

과장

전결 2026. 7. 16.

김은주

협조자

시행 마약관리과-4443

(2026. 7. 16.)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
처 마약관리과 / 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99

팩스번호 043-719-2890

/ hyanm@korea.kr

/ 비공개(5)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